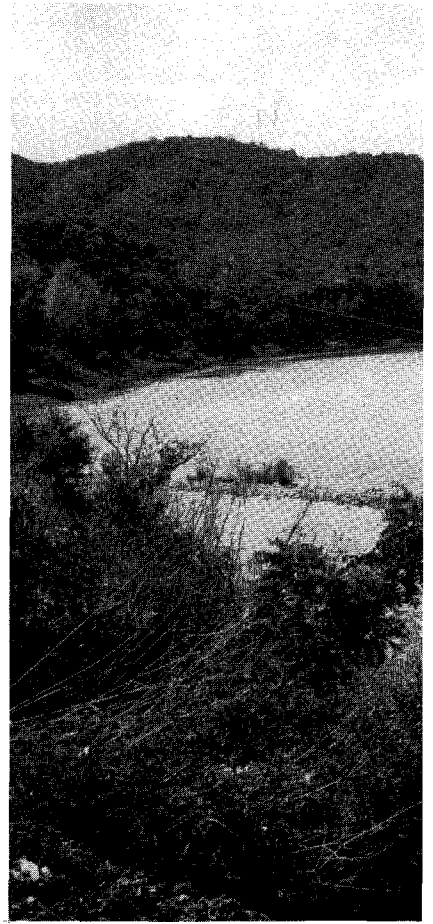


정부, 기업주, 환경관리인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신 천 줄기를 따라 한탄강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현장을 탐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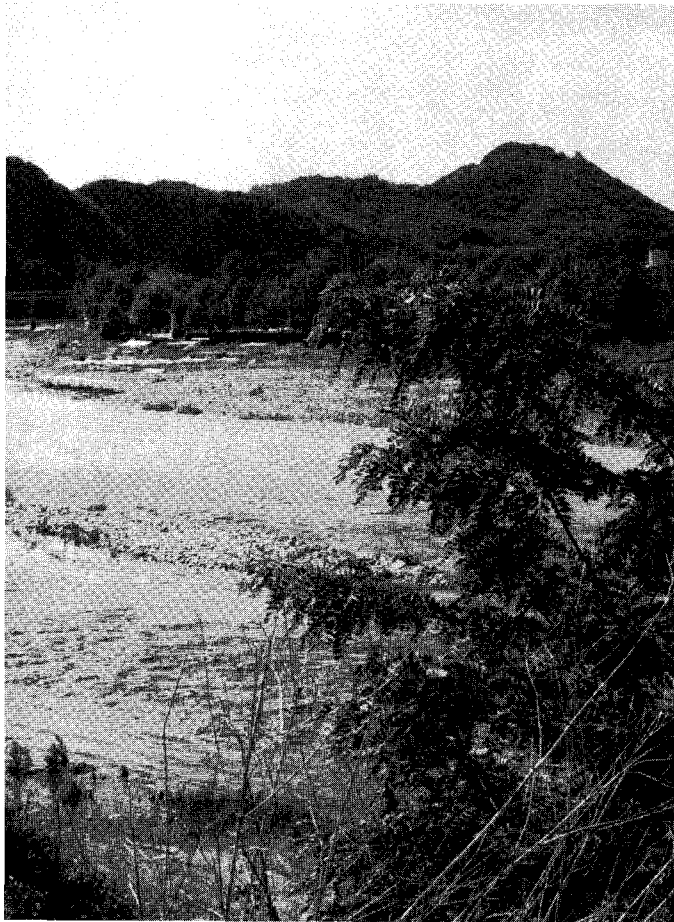
동두천시, 양주군 방향의 환경관리가 취약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나, 실상은 우리의 상상과 상식을 초월하기에 충분하였다.

양주군과 동두천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신천과 한쪽은 시커먼 폐수가 흐르고, 다른 한쪽은 다량의 비로 인한 흙탕물이 두갈래로 구분되어 흐르는 한탄강물은 피혁, 염색폐수 등의 원수 또는 슬러지 등 처리되지않은 폐수로 보여졌는데, 물고기는 커녕 어떠한 생물도 살수 없을 정도의 물이었다.

양주군과 동두천시의 경계지점과 한탄강 두지점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과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 2명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공사장에서 공사하시는 분의 말씀은 “지금은 나은 편이다. 비오기 전까지만해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작업이 곤란할 정도였으며, 밤은 낮보다 더욱 심하다” 는 것이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나?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한참 행락객이 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여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 정부에서 저리의 용자를 지원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영세업체인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릇은 요만(작게)한데 물은 이만큼(크게)이니 문제발생은 당연한 것이다. 은행에서 용자를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 만큼의 적금을 가입하라 하는데, 돈 없어 빌리러 가는 사람이 적금에 가입할 돈이 있느냐? 영세업체인 공장에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컸다.

현재와 같은 총체적인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강구해 보았다.



한탄강을 국민관광지로 유지하기 위하여 폐수(?)와 강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인위적, 임시적으로 뚝방을 쌓고 방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시점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췌하여 정부에 건의 하고자 한다.

첫째 : 지역구분을 재조정하여 고시를 정정해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구분은 환경기준(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 제93-46호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을 보면 신천의 초입 지류는 “가”지역, 신천의 중간지점인 동두천시,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남면 한산리는 “나”지역,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한탄강 주변의 연천군 연천읍, 전곡읍과 임진강 하류 주변인 파주군 문산읍, 금촌읍, 조리면은 “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분이 일괄성 없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동두천시 주변에 특혜(?)를 줌으로서 영세 피혁업체가 난립하도록 조장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한탄강 지류인 신천의 주변을 모두 “가”지역으로 정정고시하고 주변업소의 이전명령과 금융지원을 통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신천주변 뿐 아니라 환경부고시 제93-46호 전체를 재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고시하여야 한다.

둘째 : 환경관리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규제완화 문제만 거론되면 전문 환경관리인의 의무고용완화조치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다. 즉,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제19조 별표 5의 비고 6에 명시되어 있는 “수질 1종에서 3종 사업장의 수질환경관리인은 대기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없다”를 삭제한다든지, 1994년 7월 26일 개정된 “3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환경관리(수질분야) 2급에서 환경관리(수질분야) 2급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로 개정된 것,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업단지등의 공장 집단화 지역에 환경관리인 1명이 3개의 사업장을 환경관리할 수 있게한 조항 등 수질 3종 내지 4-5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천 주변 영세피혁, 염색업체의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도록 부채질 하였다.

신천의 물 흐름을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주변의 기업주와 환경담당자, 관공서 등의 총체적인 문제다. 자손만대 보호하여야 할 환경을 보호하는 첨병인 환경관리인의 고용의무를 강화하여, 적은 양이라도 전문기술인이 전문성 있게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 무허가공장 양성화 및 공장등록 허가에 환경관리의 합리적인 사전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얼마전 한시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조건없이 양성화 시키기 보다는 제반여건에 충족되는 무허가 공장만을 양성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양성화로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무허가 등록회사도 허가하여 줌으로써 문제를 야기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장등록 허가 및 무허가 공장의 양성화를 위한 규정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법처리에 합당한 시설인가 현지답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업체에 한하여 등록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허가한 것 또한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 환경관리공단 등 운영개선 진단기관을 확대하여야 하며, 관공서의 홍보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환경관리공단 본부 및 지부 환경진단팀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이나 환경단체 등도 환경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업체를 지도 및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산시키고 관공서에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인들에게 인지시켜 오염을 방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진단 신청을 하면 한 달정도 대기하여야 하는데, 보다 많은 진단팀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홍보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거부감없이 진단기관에 모든 자료를 공개토록 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전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 공무원의 단속시 지도를 병행하여 적정처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환경전문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환경관리인 고용의무, 행정적인 허가 등 환경규제완화에 따라 최근 관공서에서는 허가, 신고 등의 절차 규제보다는 공정상 또는 처리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방류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단속보다 기업이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다년간 쌓은 현장경험을 겸비한 환경전문직으로 환경단속원을 구성하여 계몽, 지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곧 지도는 없고, 단속만 있는 우리의 환경지도단속업무 현실 속에서 장기적인 환경발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업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청사항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첫째 : 환경관리인이 기술을 발휘하여 적법처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방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최선의 노력으로 처리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단방류 그 자체는 환경관리인이든, 무단방류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알면서 모른 척하거나 또는 등안시 한 기업주이든간에 용서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용서해서도 안된다.

기업주는 자격을 갖춘 최적의 환경관리인을 고용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정화처리한 후 방류할 수 있도록 처리 용량 검토, 난분해성 물질 유입억제, 적절한 처리 계통 등을 인지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총량규제, Green Round 등에 대비하여 최적 상태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둘째 : 아낌없는 투자가 결코 손실이 아니고 생산성 임을 알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기업활동의 최우선이 이윤 창출로만 인식되어 환경문제는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비용이 벌금, 초과부과금, 개선명령, 약품처리비 등 보다 고가라는 사고를 버리고, 환경관리인이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원가절감, 약품처리비 절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함으로써 초과부과금 미납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특히 총량규제 시행으로 인한 기본부과금 등이 면제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의 요인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국민 건강의 첫걸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 환경의식 및 지식 습득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에 소속된 환경관리인은 정부의 단속과 기업의 운영방침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농도기준을 유지하기에는 기업의 시설이 미비하여 배출허용농도기준 초과, 배출시설 무허가, 시설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기업주의 환경의식 및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인만큼 환경관리인 혼자만의 고민거리나 책임이기 보다는 모두가 사명감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는 환경교육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 기업주는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환경관리인에게 전가하여서는 않된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인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기업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기업에 소속된 환경관리인이 생계유지수단으로 배출허용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무단방류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기업주는 환경관리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제지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 또한 기업주의 역할이기에 어느 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환경관리인 역시 정부나 기업의 개선을 바라기에 앞서 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 의무사항과 준수사항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환경전문지식 습득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반성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방류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명시된 범법이기 이전에, 적정처리는 환경관리인의 기본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인류를 말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며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둘째 : 환경관리인의 위상은 환경관리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

다른 업무는 몰라도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기업의 이윤과 병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관리 담당자로서 적정처리, 공정개선,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경관리인의 위상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성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위상이 함께 하는 것이다.

환경관리인이라 함은 스스로 실력을 쌓아,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장의 가동을 중단 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며, 또한 환경관리 뿐만 아니라 총무, 공무, 생산 등 공장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을 때 명실상부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셋째 : 기업주와 불의의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인의 의무와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기 보다는 기업을 고발(제보)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와 개선으로 추후 다른 환경관리인에게 불의의 타협이 요구되지 않도록 전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환경관리인의 양심과 의무를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온 국민,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한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을 직업으로 하는 모든 이를 욕되게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넷째 : 환경교육시 기업주를 대동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시 단순히 환경관리인만 참석하지 말고 기업주도 참석하여 환경의 심각성, 환경지식, 적정처리 방법, 폐수처리 공정, 재정 지원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환경현황을 기업주가 인식하여 적극적인 오염방지에 앞장서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기업주(재정), 환경관리인(기술), 정부(지도, 정책)가 삼위일체 되어야만 금수강산을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환경관리인의 기술 및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업주의 무관심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교육에 참가토록하여 환경 전반에 관한 상황에서부터 기업환경의 문제점까지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기업주에게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극시켜 환경보호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 기업의 환경업무를 공개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환경관리 부분을 공개토록 하자. 즉, 환경관리공단 환경진단팀의 진단을 받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하든가, 또는 주위의 적정처리업체, 환경친화적 기업, 전년도 환경관리모범업체 등과 같이 일찍부터 환경관리의 심각성을 깨달아 진취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운영을 무조건 숨기기 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조언을 얻음으로써 나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애로사항도 다소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고난을 이겨내면 미래의 밝은 환경이 찾아올 것이다.

여섯째 : 개선에 대한 내용을 기안 등으로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환경보전법 제23조(환경관리인) ④의 내용과 같이 기업주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어느 부분을 개선하여야 하고, 가격이 얼마고 하는 등 개선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지 말고 구체적인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 서류로 작성하여 지휘 계통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환경관리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처리)등을 기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키는 방법으로서 하급자의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지도단속시 환경관리인이 법적인 양벌규정에 유대미지 않게 되는 길이며, 문제해결의 지름길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 부적정 운영신고를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④,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신고를 유용하게 운영,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활성오니법등 폐수처리방식이 1년내내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때 환경관리인은 돌발사고, 시설의 개선, 변경, 보수,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적절한 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주에게 문제점을 이해시켜 부적정 운영신고를 한후 적절한 처리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보수, 개선하여 정상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며 남의 이목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어느 기업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성오니법에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유지하는 것은 까다로운 업무중의 하나이다. 미생물은 순간적인 충격과 환경여건 변화에 일시적으로 사멸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부적정 운영신고는 수치도 아니며 과오도 아니다. 이는 더욱 더 나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보 뒤로 물러서서 재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문제점을 발체하여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기업주에 대한 요청사항,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나열하였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환경이 발전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지 결코, 어느 일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우리의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일부인을 구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 하도록 계몽과 보전활동이 우선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본 연합회도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불이익을 당한 회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례는 전회원의 이름으로 제보하고 고발하여 본 연합회의 목적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임원일동